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의 2009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학교법인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한편, 비교표시된 2008년 2월 29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삼정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08년 4월 11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어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2009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200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그리고 자금수지의 내용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안 진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梁承禹 양승우 

2009년 4월 14일

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09년 4월 14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